

2025 외국인 인적용역에 대한 인건비 지급 안내

2025.5.26. / 대외협력처

1. 목적

- 외국인 교원 및 전문가 초청 강연시 강사료 및 인건비 책정 및 지급에 이해를 돕고자 함

2.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 국가별 「조세조약」

3-1. [독립된 인적용역소득] 단기 특강으로 개인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 **과세여부**-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회피를 위한 조세조약 협정 체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만 과세

| 하나라도 충족하면 과세 | 해당 |
|--|---|
| ① 고정시설 보유 (31개국) |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라오스, 루마니아, 모로코, 몽골, 베트남, 벨라루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티오피아, 영국 , 오만,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튀니지,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호주 |
| ① 고정시설 보유 ② 연간 183일 이상(초과) 체재 (35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대만 ,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몰타, 방글라데시(120일),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90일), 일본 , 중국 , 칠레, 캐나다 , 케냐, 투르크메니스탄,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필리핀(120일) |
| ① 고정시설 보유(183일 이상 유지) ② 연간 183일 이상(초과) 체재 ③ 대가가 연간 일정금액 초과 (2개국) | 미국(과세연도중 미화 3천불) 파푸아뉴기니(365일중 미화 1만불) |
| ① 고정시설 보유 ② 연간 183일 이상(초과) 체재 ③ 대가를 수행지국 거주자가 지급 ④ 대가를 수행지국 고정사업장이 부담 * ③·④의 대가가 일정금액 초과 (4개국) | 미얀마(회계연도중 미화 12,000불) 태국(회계연도중 미화 12,000불) 파키스탄(과세연도중 미화 10,000불) 피지(연간 피지화 10,000불) |
| ① 연간 183일 이상(초과) 체재 (1개국) | 스리랑카 |
| ① 연간 183일 이상(초과) 체재 ② 대가를 수행지국 거주자가 지급 ③ 대가를 수행지국 고정사업장이 부담(3개국) | 덴마크, 벨기에, 튀르키예 |
| ① 연간 183일 이상(초과) 체재 ② 대가를 수행지국 거주자가 지급 ③ 대가를 수행지국 고정사업장이 부담 * ②·③의 대가가 일정금액 초과 | 말레이시아(역년중 미화 3,000불) |
| ① 대가를 수행지국 법인이 부담 ② 대가를 수행지국 고정사업장이 부담 | 브라질 |

◦ 적용세율

| 소득의 종류 | 세율 |
|--------|------------------------------------|
| 인적용역 | 20%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22%) |

※ 학교가 항공료 등의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

※ 거주자(183일 이상 국내 체재)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최종 세율은 8.8%

◦ 과세 및 비용 지급 절차

| 구분 | 내용 |
|-------|--|
| 제출 방법 | 실질 귀속자 → 소득 지급자 → 세무서 |
| 제출 서류 | 프리랜서 계약서 ¹⁾ or 국내 비거주자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지급 신청서 ²⁾ 송금정보요청서 ³⁾ 외국인등록증(90일 이상 국내 체류 시) or 여권사본 |
| 비용 지급 | 실지급액 지급 |

◦ 예시

| |
|--|
| EX 1 _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워크샵에 초청하여 동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연료를 수령한 일본인이 국내에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당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EX 2 _ 일본 거주자가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 받은 대가 |
| 일본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A가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쟁점용역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쟁점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A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제1항 가목(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목(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 EX 3 _ 미국거주 교수가 개인자격으로 행하는 특별강의 대가 |
|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의 3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별도의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음 |

1) 2025 영문 행정 서식

2) 2025 영문 행정 서식

3) 2025 영문 행정 서식

3-2. [교수의 보수] 강의 및 연구 활동 등을 위한 교원 초빙

◦ 과세여부_조세조약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강의와 연구활동에 대한 보수는 면세

| 유형 | 해당 |
|-----------------|--|
| 면세조항 없음 (16개국) |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개정후), 아랍에미리트(개정후),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개정후), 칠레, 캐나다, 튀니지, 핀란드 , 페루, 홍콩 |
| 2년간 면세 (73개국) | 가봉,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스리랑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 오만, 요르단, 우루과이,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즈,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필리핀, 호주 |
| 3년간 면세 (4개국) | 조지아, 중국 , 카타르, 타지키스탄 |
| 면세기간 제한없음 (2개국) | 알바니아, 헝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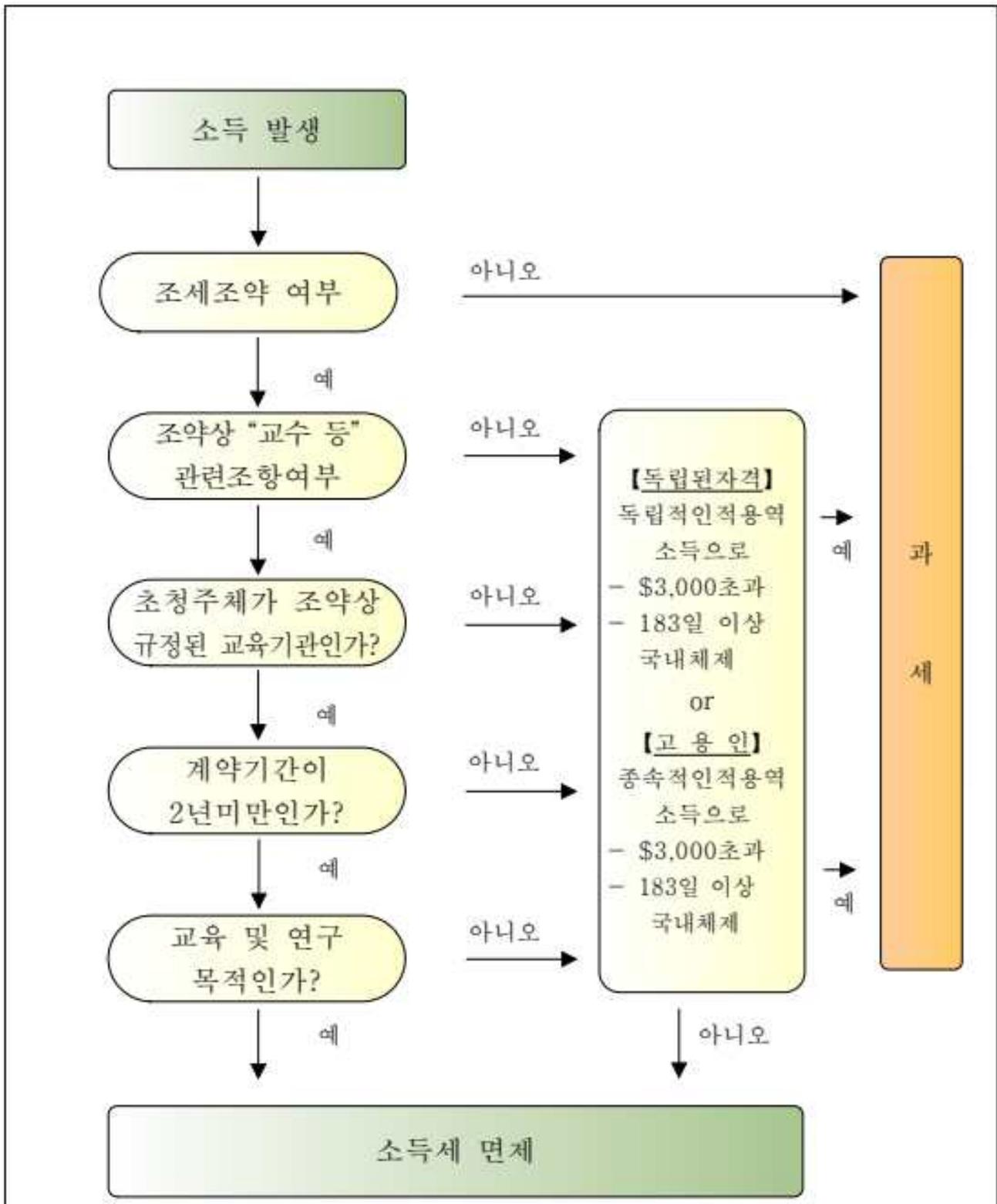
- ※ 체류 및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당사자간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판단
- ※ 해당국가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도 해당
- ※ 2년 초과 계약 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계약 해지시에도 면세 불가
- ※ 이미 한국에 체류중인 자(타목적으로 기입국한 외국인)는 해당되지 않음(과세)

◦ 면세 및 비용 지급 절차_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지급자(학교)에게 제출하고 학교는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구분 | 내용 |
|-------|--|
| 제출 방법 | 실질 귀속자 → 소득 지급자 → 세무서 |
| 제출 서류 | 비과세면제신청서⁴⁾ 3부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송금정보요청서 (대학 영문양식) 외국인등록증(90일 이상 국내 체류 시) or 여권사본 |
| 급여 지급 | 전액 지급 |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 (하단 첨부)

붙임 1.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면제여부 확인 도표



※ 조세조약 여부 및 관련조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eng를 참조하세요
 - 상기 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계약국별 조세조약을 반드시 확인 하세요 -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소득자 | ① 성명(법인명) | |
| |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 ③ 주소 | |
| | ④ 생년월일 | ⑤ 거주지국 |
| 소득 지급자 | ⑦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 |
| | ⑧ 대표자(성명) | |
| |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 ⑩ 소재지 또는 주소 | |
| 소득유형 | ⑪ 이자 | [] 공사채 [] 공사채투자신탁 [] 예금·적금 [] 대부금 [] 기타 |
| | ⑫ 배당 | [] 증권투자신탁 [] 의제배당 [] 법인 간 배당 [] 기타 |
| | ⑬ 사용료 | [] 특허권·상표권 [] 저작권 [] 장비 임차 [] 기타 |
| | ⑭ 인적용역 | [] 배우·음악가·기타 공중연예인 [] 직업운동가 [] 기타 |
| | ⑮ 기타 | |

이자·배당소득

| | |
|--------|---------|
| ⑯ 계좌번호 | ⑰ 실명 구분 |
|--------|---------|

(단위: 원)

| ⑱ 지급일 | ⑲ 지급액 | ⑳ 세율 | ㉑ 원천징수할 세액 | ㉒ 비과세·면제세액 |
|-------|-------|------|------------|------------|
| | | | | |
| | | | | |

㉓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㉔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 제156조의2(「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
|-----|--------------------|------------------------|
| 대리인 | ㉕ 대리인 유형 | [] 납세관리인 [] 그 밖의 대리인 |
| | ㉖ 성명 또는 법인명 | |
| | ㉗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 ㉘ 주소 또는 소재지 | |
| | ㉙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 분 |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가. 외국법인 | |
| (1)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인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계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인 경우는 제외 | 거주자증명서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의 사용허여(使用許與) 계약서 등 해당 권리의 등록 및 소유권자·실시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 (1)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외국법인 | 거주자증명서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 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나. 비거주자 | |

-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 이 신청서의 제목 []란에 "√"를 표시합니다.
- "① 성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및 "㉗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 기 재 번 호 |
|-----|---------------------------|---|
| (1) | 원 칙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 (3) |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 "③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 "④ 생년월일"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 "⑤ 거주지국"란 및 "⑥ 거주지국 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⑦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습니다.
-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⑩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 "⑪ 이자"란부터 "⑮ 소득유형"란까지: 해당 유형의 []에 "√"를 표시합니다.
- "⑰ 실명 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명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 "⑲ 지급액"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소득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㉕ 대리인유형"란부터 "㉙ 납세지 관할 세무서"란까지: 이 신청서를 대리인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 적으며,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Application for Non-Taxation • Exemption of ([] Individual Income Tax [] Corporate Income Tax) on Korean Source ([] Interest [] Dividend [] Royalty [] Personal Services [] Other) Income under the Tax Treaty

※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Front)

| | | | | |
|---|---|--|---------------------------------|-----------------------|
| Receipt No. | Receipt Date | 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 | |
| Beneficiary | ①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 | | |
| | ②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 | | |
| | ③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 | |
| | ④ Date of Birth | ⑤ Country of Residence | | ⑥ Country Code |
| Income Payer | ⑦ Name of Corporation (Korean) | | ⑦ Name of Corporation (English) | |
| | ⑧ Name of Representative | | | |
| | ⑨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 | | |
| | ⑩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 | |
| Type of Income | ⑪ Interest | [] Bonds [] Bonds Investment Trust [] Deposit and Savings [] Loans [] Others | | |
| | ⑫ Dividend | [] Securities Investment Trust [] Deemed Dividends [] Dividend Paid from One Corporation to Another [] Others | | |
| | ⑬ Royalty | [] Patents, Trademark [] Copyrights [] Equipment Lease [] Others | | |
| | ⑭ Personal Services | [] Actors·Musicians·Public entertainers [] Professional athletes [] Others | | |
| | ⑮ Others | | | |
| Interest / Dividend Income | | | | |
| ⑯ Account No. | | | | ⑰ Real name confirmed |
| (Unit: KRW) | | | | |
| ⑱ Date of Payment | ⑲ Amount Paid | ⑳ Tax Rate | ㉑ Tax to be Withheld | ㉒ Tax Exempted |
| | | | | |
| ㉓ Basis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 | Article (), Paragraph (), Clause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 | |
| ㉔ Covered Period | | . . . ~ . . . (YYYY/MM/DD) | | |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 Income" under Article 156-2 (or 98-4) of the "Income Tax Act (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 (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District Tax Office

| | | | | |
|-------|---|--|---------------|------------|
| Agent | ㉕ Type of Agent | | [] Tax Agent | [] Others |
| | ㉖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 | | |
| | ㉗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 | | |
| | ㉘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 | |
| | ㉙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 | | |

Attached Documents

-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t jurisdiction [for a foreign corporation, evidentiary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38-4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e.g. Agreement or contract)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Head of () District Tax Office Seal